

## -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검토 의견서

**1. 발의연월일:** 2022. 1. 18.

**2. 발의자:** 박정환 의원 등 8명

#### **3.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 대장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7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5.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

#### **6. 검토의견**

- 기존 예규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화하는 것으로 대구시 내 다른 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주민 건강과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체육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를 체육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토록 하고, 제정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예규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규칙으로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 유
제2조(정의) 1.~2. (생략)  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u>관리하도록 구청장이 지</u>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1.~2. (조례 안과 같음)  3. ----- ----- <u>관리하는 체육 업무</u> <u>담당부서를 말한다.</u>	총괄부서를 명확히 하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제5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치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 [별지 제1호서식]

##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제7조제1항 관련)

점검자 : (인)

### [별지 제2호서식]

## 야외운동기구 관리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

    나.~차. <생략>

3.~7.<생략>

###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